

##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=====

의안 번호	제 18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□ 개정사유

국내여비규정(대통령령 제15,247호, '96. 12. 31)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여비의 종류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, "가족이전비"를 "가족여비"로 함.  
(제2조)

### □ 개정근거

-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5,247호, '96. 12. 31.)

### □ 조 례 안 : 덧 붙 임

### □ 참 고 사 항 : 덧 붙 임
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관계법령 발췌서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

##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, "가족이전비로"를 "가족여비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